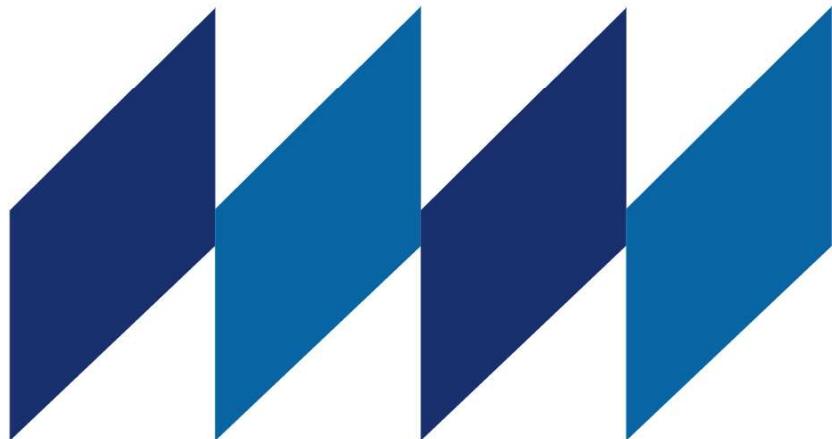


#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모범기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① JB금융그룹의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모범기준(Environmental & Social Risk Management Framework, 이하 본 모범기준)은 JB금융그룹 「지속가능 금융 프레임워크」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그룹의 금융활동에서 환경(E), 사회(S) 리스크를 식별·평가·관리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환경·사회적 요소가 여신 및 투자 의사결정의 중요한 판단요소로 부각됨에 따라, 본 모범기준은 다양한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그룹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제 2 조 (원칙)** 본 모범기준은 다음 원칙을 준수한다.

1.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한다.
2. 환경·사회 관련 리스크를 식별·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운영하여 회사의 사업 영위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3. 환경·사회적으로 유해한 영역들에 대해 부정적 영향이 심대한 영역에 대해서는 배제 영역 정책을 운영한다.
4. 대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 서비스 제공 시 환경·사회 리스크를 평가하고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5.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공개하여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한다.
6. 전 임직원의 참여를 통해 환경·사회 리스크 인식을 확대하고 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기존 리스크 시스템에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를 통합하여 일관적인 전사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 제 2 장 적용 범위

본 모범기준은 향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면 프로젝트파이낸싱, 기업여신 외 일반투자, 자산운용 등 그룹 사업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개별 금융활동별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대상 자격 및 요건, 심사 지표 및 기준, 심사 절차와 일정 등은 계열사별 세부 실무 지침을 통해 별도 개발·운영하고자 한다.

- 제 3 조 (적용 대상)**
- ① 본 모범규준은 JB금융그룹 내 모든 계열사의 금융활동에 적용된다.
  - ② 본 모범규준의 적용 대상은 그룹이 설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기업여신, 일반투자, 자산운용 등의 금융활동과, ‘배제영역’ 및 ‘유의영역’에서 다루는 잠재적 위험 산업으로 한다.
  - ③ 본 모범규준은 JB금융그룹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 규정, 금융당국의 정책, 표준, 지침 등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 범위 내에서 적용되며,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여신, 일반투자, 자산운용 등의 사례별로 본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항을 둘 수 있다.

- 제 4 조 (계열사 세부지침)**
- ① 계열사는 본 모범규준을 준수해야 하며, 자체 사업 특성과 리스크 요인을 고려해 세부지침을 수립, 운영 할 수 있다.
  - ② 계열사가 마련한 세부지침은 JB금융그룹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 및 본 모범규준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
  - ③ 세부지침의 제정·개정 시 지주 및 계열사의 ESG 담당 임원, 부서장으로 구성된 ESG 협의회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④ 계열사는 기업 신용평가 시 ESG를 고려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⑤ 계열사는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결과와 주요 이슈를 정기적으로 지주사 총괄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 제 3 장 환경·사회 리스크 정의

환경·사회 리스크는 금융서비스 제공 대상의 환경(E) 및 사회(S) 요인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손실 가능성을 의미하여, 환경·사회 리스크관리는 이를 체계적으로 식별·평가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 제 5 조 (환경·사회 리스크의 정의)

1. 환경 리스크 :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대기/수질/토양 오염, 산림파괴, 생물다양성 훼손 및 서식지 파괴, 자원 고갈 및 에너지 비효율 등을 포괄한다.
2. 사회 리스크 : 아동노동, 강제노동, 차별 등 인권침해, 안전사고, 보건, 위생 문제, 지역사회와의 갈등 및 이주 문제, 부패, 윤리적 리스크 등을 포괄한다.

### 제 6 조 (리스크 유형의 세분화) 환경·사회 리스크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관리한다.

1. 직접 리스크 : 금융지원 대상 사업 자체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적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리스크 (예 : 내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근로자 안전사고, 인권침해 등)
2. 간접 리스크 : 공급망, 협력사, 투자처 등에서 발생하는 영향으로 인해 금융기관에 전이되는 리스크 (예 : 고객의 환경오염, 인권침해, 사회적 논란 등)
3. 평판 리스크 : 환경,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 고객, 투자자, 규제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가 훼손되는 리스크 (예 : 고객·시민단체 및 언론의 비판, 사회적 이슈 확산)

## 제 4 장 조직 체계

환경·사회 리스크관리는 지주사와 계열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체적으로 관리한다. 조직 관련 세부사항은 각 사의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따른다.

### 제 7 조 (지주사의 역할)

1.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는 환경·사회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최상위 정책과 기준을 심의·의결한다.
2. 지주사 총괄부서는 계열사의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이슈 및 고위험 거래를 ESG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3. 지주사 총괄부서는 계열사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시스템·프로세스 개선 지원 및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제 8 조 (계열사의 역할)

1. 계열사는 여신·투자 등 금융거래 심사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사회 리스크를 평가하고 결과를 기록·보관한다.
2. 계열사는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 거래의 리스크 완화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그 결과를 지주사 총괄부서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3. 계열사는 내부 역량 강화 및 이행을 위해 계열사 임직원 대상 교육 시스템·프로세스 개선 지원 및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제 5 장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체계는 ‘배제영역’과 ‘유의영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제 9 조 (배제영역 관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 및 활동은 환경·사회적으로 위험이 명확하게 식별되거나, 부정적 환경·사회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등을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활동
  - 가. 불법 벌목, 밀렵, 멸종위기종 거래 등
  - 나. 높은 보존가치를 보유한 지역(유적지, 천연자원 매립지 등) 또는 세계문화유산, 국가 보호지역 등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역 내 비즈니스 활동
  - 다. 국제 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행위(아동노동, 강제노동, 인신매매 등의 인권침해 활동)
  - 라. 불법적인 도박/포르노 산업과 관련된 거래
2. 고탄소, 환경 유해 산업
  - 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및 석탄 채굴 사업
  - 나.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석유, 가스 탐사 및 채굴활동
  - 다. 핵폐기물 처리와 같이 대규모 환경 리스크를 수반하는 사업
3. 사회적 리스크가 큰 활동
  - 가. 인권침해 및 부패와 관련된 사업
  - 나. 지역사회 강제이주, 갈등을 초래하는 대규모 사업

**제 10 조 (유의영역 관리)** ① 다음 각 호에서 정의된 환경·사회적 영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산업, 경제활동, 프로젝트 등은 ‘유의 영역’으로 지정한다.

1. 환경 영향 : 온실가스 고배출 등으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고 자연 및 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 또는 업종
2. 사회 영향 : 생활권 침해(토착민의 비자발적 이주 등), 산업안전, 보건 등을 포함한 인권과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사업 또는 업종

② 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유의 영역에 해당하는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시 해당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환경·사회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한다.
2. 리스크가 식별된 경우, 적절한 완화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적용한다.
3. 유의 영역 거래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지주사 총괄부서에 보고한다.

③ 유의 영역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조림지에서의 목재 벌목, 벌채 및 임산물의 1·2차 가공, 펄프·제지업)
2. 기타 고탄소 배출 산업(정유 및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원유·가스 개발 사업 등)
3. 무기·군수업
4. 유망어업
5. 담배 제품 제조업

④ 유의영역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금융지원을 허용하되 아래 기준을 따른다.

1. 심사절차 강화 : 심사과정에서 환경·사회 관련 추가 자료를 받아 검토한다.
2. 조건부 지원 : 환경·사회 리스크 완화 방안(오염저감시설 설치,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금융지원 조건으로 부과
3. 사후관리 강화 : 금융지원 이후 정기적 모니터링(배출량, 익스포저 추이 등)을 실시하고, 개선조치 이행 여부를 검증

## 제 6 장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제 11 조 (환경·사회 리스크 심사)** ① 환경·사회 리스크를 통괄하는 지주사 총괄부서는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변동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시 ESG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또한 계열사 주무부서는 각 사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환경·사회 리스크관리를 위한 절차 및 세부 업무 기준 등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적도원칙을 준용한다.

② 환경·사회 리스크 심사 대상은 일정금액 이상의 일반 기업여신 및 개발중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대상으로 하며,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사회 심사 및 통제가 가능한 펀드 형식의 대체(투자)자산을 포함한다.

③ 일정금액 이상의 일반기업 여신의 환경·사회 리스크 심사 세부사항은 각 사의 하위 지침에서 정한다.

④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환경·사회 리스크 심사는 사전검토, 등급분류, 환경·사회 영향 평가, 모니터링의 4단계 과정으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1. 사전검토(Screening) : 투자 대상 여신이 회사에서 지향하는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단계로, 프로젝트의 유형·목적 등 사업 내용을 파악한 후 차주로부터 <별표1> 환경·사회 리스크 사전 체크리스트를 제출 받는다. 사전검토의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도구는 지주사가 제공하며, 계열사는 이를 기준으로 사전검토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다.

2. 등급분류(Risk Categorization) : 프로젝트의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의 정도에 따라 리스크 등급을 분류하는 단계로, <별표2> 프로젝트별 등급기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리스크 등급의 분류시 필요한 경우 국가가 정한 환경·사회 위험 관련 평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가. A등급 : 부정적 환경·사회 위험이 중대하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렵거나 전례가 없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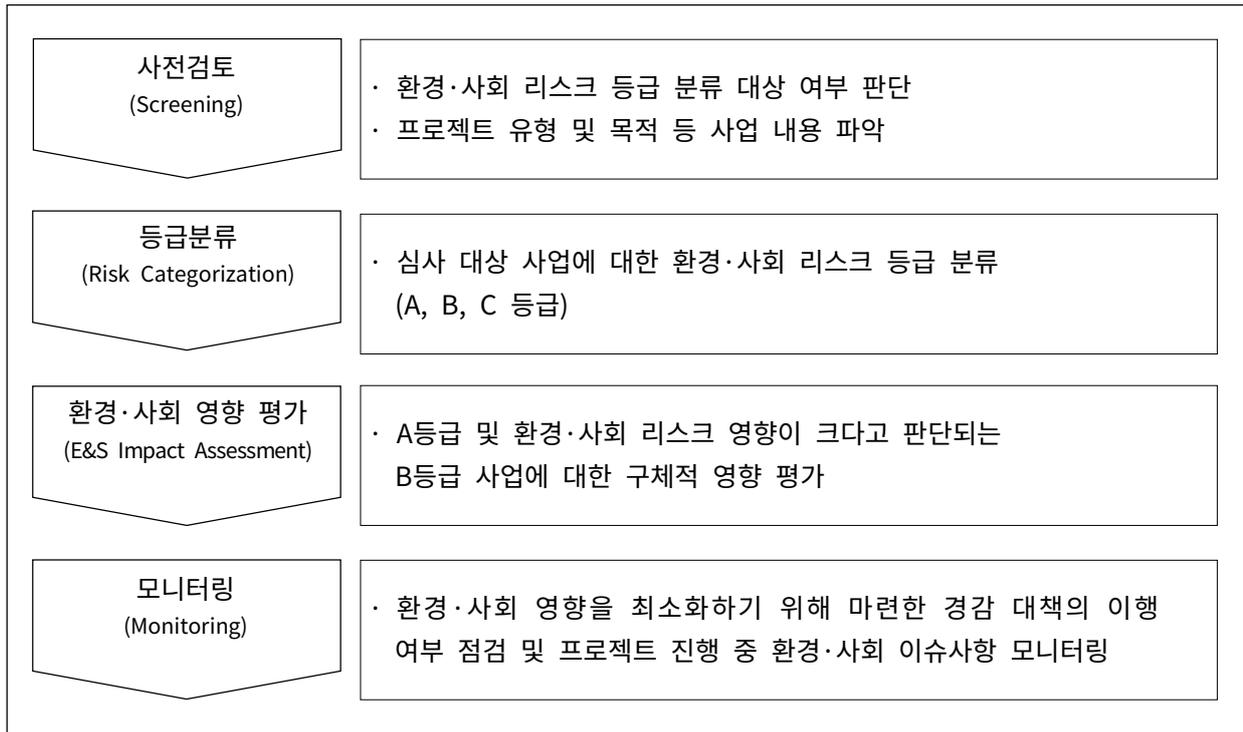
나. B등급 : 부정적 환경·사회 위험이 제한적이고, 발생 빈도가 낮고, 영향 범위가 사업 현장에 국한되며, 경감 또는 회복조치가 용이한 사업

다. C등급 : 부정적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이 경미하거나 없는 사업

3. 환경·사회 영향 평가(E&S Impact Assessment) : 모든 A등급과 환경·사회 리스크 및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B등급 프로젝트에 대해 리스크 및 영향을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로 필요시 실사 등을 진행한다.

4. 모니터링(Monitoring) : 환경·사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경감 대책의 이행여부와 진행 중인 환경·사회 이슈사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모니터링 방법은 차주와 대주 간 협의에 따른다.

[환경·사회 리스크 심사 절차도]



**제 12 조 (환경·사회 리스크 측정 및 평가)** <별표2>로 리스크 등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금융지원 대상 거래에 대해 식별된 환경·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를 아래와 같이 측정,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리스크 등급을 산정한다.

1. 환경·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 금융지원 대상 사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수준을 평가한다. 평가항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가.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배출, 대기, 수질, 토양 오염
- 나.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훼손, 산림파괴 및 토지이용 변화
- 다. 인권침해(아동, 강제노동, 차별), 보건, 안전 문제
- 라. 지역사회 갈등, 이주 문제 등 사회적 영향

영향수준은 다음과 같으며, 필요 시 현장실사 및 외부 평가를 병행한다.

[환경·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 배 점 | 정 의                | 내 용                         |
|-----|--------------------|-----------------------------|
| 1   | 사소 (Insignificant) | · 부정적 영향 정도가 미약한 수준         |
| 2   | 경미 (Minor)         | · 부정적 영향 정도가 경미한 수준         |
| 3   | 보통 (Moderate)      | · 부정적 영향 정도가 보통인 수준         |
| 4   | 상당히 큼 (Major)      | · 부정적 영향 정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수준 |
| 5   | 매우 큼 (Outstanding) | · 부정적 영향 정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수준  |

2. 회사(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도 : 환경·사회 리스크가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영향을 평가한다. 주요 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가. 재무적 영향 : 프로젝트의 수익성 악화, 채무불이행 가능성, 담보가치 하락

나. 법적, 규제 리스크 : 국내외 규제 위반, 소송, 제재 발생 가능성

다. 평판 리스크 : 고객, 투자자, 규제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신뢰 훼손 가능성

라. 전략적 영향 : 그룹 ESG 전략 및 지속가능금융 프레임워크와의 정합성 여부

영향수준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 배 점 | 정 의   | 내 용                |
|-----|-------|--------------------|
| 1   | 매우 낮음 | · 영향 정도가 미약한 수준    |
| 2   | 낮음    | · 영향 정도가 경미한 수준    |
| 3   | 보통    | · 영향 정도가 보통인 수준    |
| 4   | 높음    | · 영향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 |
| 5   | 매우 높음 | · 영향 정도가 매우 높은 수준  |

3. 리스크 등급 기준 : 리스크 등급은 환경·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와 회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를 곱하여 평점을 산출하며, 평점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리스크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한다.

가. A등급 : 부정적 환경·사회 위험이 중대하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회복이 어렵거나 전례가 없는 사업 (16점 이상)

나. B등급 : 부정적 환경·사회 위험이 제한적이고, 발생 빈도가 낮고, 영향 범위가 사업 현장에 국한되며, 경감 또는 회복조치가 용이한 사업 (9점 이상 15점 이하)

다. C등급 : 부정적 환경·사회 위험 및 영향이 경미하거나 없는 사업 (8점 이하)

[리스크 등급 기준 표]

| 구 분                |       |   |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    |    |    |       |
|--------------------|-------|---|-------------|----|----|----|-------|
|                    |       |   | 1           | 2  | 3  | 4  | 5     |
|                    |       |   | 매우 낮음       | 낮음 | 보통 | 높음 | 매우 높음 |
| 환경·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 사소    | 1 | 1           | 2  | 3  | 4  | 5     |
|                    | 경미    | 2 | 2           | 4  | 6  | 8  | 10    |
|                    | 보통    | 3 | 3           | 6  | 9  | 12 | 15    |
|                    | 상당히 큼 | 4 | 4           | 8  | 12 | 16 | 20    |
|                    | 매우 큼  | 5 | 5           | 10 | 15 | 20 | 25    |

4. 조건부 승인 : B등급 이상 거래에 대해서는 환경, 사회 리스크 완화대책 수립을 금융지원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5. 사후관리 연계 : 평가 결과는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추적, 관리하고, 고위험 거래로 식별된 경우 계열사 담당임원의 승인을 거쳐 지주사 ESG위원회에 보고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리스크를 관리한다.

## 제 7 장 산업별 가이드라인

JB금융그룹은 배제영역, 유의영역 외 지구 온난화, 미세먼지 배출, 생물다양성 등 자연환경, 생태계, 지역 사회의 존속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업별 환경·사회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운영한다. 산업별 유의업종에 대한 사항은 <별표3> 유의영역 업종 분류를 참고할 수 있다.

### 제 13 조 (농업 및 어업)

1. 적용 범위 : 대규모 곡물 생산(곡류, 팥, 콩, 커피, 사탕수수 등 포함), 대규모 채소/원예/화훼/과일 재배, 양식업 및 어업,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농업(A01)과 어업(A03) 부문이 해당된다.
2. 주요 환경·사회 위험 : 농경지 전환에 따른 산림 훼손 및 생태 서식지 훼손, 유해한 비료 및 살충제 사용에 따른 토양 및 지표수 오염 등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인권/노동 기본권 침해,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식품 안전성 위협, 농가 독점에 따른 소득 불균형, 농지에 대한 불법 점유에 따른 농촌 지역 사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3. 우선 고려사항
  - 가.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및 유사 수준의 경영인증을 획득했는지 확인한다.
  - 나. 온실가스 배출현황 모니터링, 배출량 감축 노력, 에너지 효율 제고,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등 환경 영향 저감을 위한 조치 사항을 시행하고 투명하게 공시하였는지 파악한다.
  - 다. 팥 및 콩 생산과 관련한 여신 및 투자는 각각 RSPO(Roundtable on Responsible Palm Oil)<sup>1)</sup>와 RTRS(Roundtable on Responsible Soy)<sup>2)</sup> 인증을 취득한 농장 혹은 업체만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 라.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1) RSPO(Roundtable on Responsible Palm Oil) : 팥 생산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팥에 대한 공인된 인증 기준 마련

2) RTRS(Roundtable on Responsible Soy) : 콩 생산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콩에 대한 공인된 인증 기준 마련

## 제 14 조 (임업)

1. 적용 범위 : 영림업, 임산물 생산업, 임산물 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임업(A02) 부문이 해당된다.
2. 주요 환경·사회 위험 : 산림 벌채에 따른 자연 생태계 파괴, 산림 환경 변화에 따른 외래종 유입으로 생태계 교란, 산불, 산사태, 산림 파괴로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 저감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야생동물 개체 수 감소 등이 야기되며, 인권/노동 기본권 침해,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지역 주민 혹은 지역 내 소규모 임업 종사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3. 우선 고려사항
  - 가. 기업이 법률을 준수하고, 불법 벌목을 방지하는 정책과 절차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나. 펄프의 표백 공정이 필요한 경우, 무염소표백(Elementary Chlorine Free) 또는 완전무염소표백(Totally Chlorine Free) 기술을 도입·적용해야 한다.
  - 다. 국제금융공사(IFC)에서 제시하는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배출지표(유속, HRTLh, TSS, COD, BOD, AOX, N, PS 등)<sup>3)</sup>를 모니터링 및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라. 이니셔티브 참여(국제삼림관리협의회(FSC), 삼림인증승인프로그램(PEFC) 등) 여부를 확인 한다.

## 제 15 조 (광업)

1. 적용 범위 : 광물의 채굴, 광산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계획 및 개발, 광산 운영, 광산 폐쇄, 광산 재건, 추출된 광물의 현장 가공 등 광업과 연계된 모든 활동이 해당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B05), 금속 광업(B06),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B07), 광업 지원 서비스업(B08) 부문이 해당된다.

3)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배출지표

- 유속 : 물이 흐르는 속도
- HRT(Hydraulic Tetntion Time) : 폐수가 처리시설에 머무르는 평균시간
- TSS(Total Suspended Solides) : 물 속에 부유하는 고형물의 총량
- COD(Chemical Oxygen Demand) : 물 속에 유기물질을 화학적으로 산화하는데 필요한 산소량
-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소비하는 산소량
- AOX(Adsorbable Organic Halides) : 활성탄에 흡착되는 유기 할로겐 화합물의 양
- N(Nitrogen) : 질소
- PS(Phosphorus) : 인

2. 주요 환경·사회 위험 : 광산 운영 및 광물 채굴에 따른 문화 유적지 및 멸종위기종 자연 생태 서식지 훼손. 광업 활동에 따른 수원 상류 오염물질 확산 피해, 광물 폐기물의 강가 혹은 해변 지역 불법 유기에 따른 주변 지역 오염, 채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트럭 교통 및 관련 도로공사 활동에 따른 부수적 환경오염이 야기될 수 있으며, 광산 작업자에 대한 건강 및 안전 관리 미흡에 따른 재해율 증가, 아동노동, 강제노동, 원주민의 거주지 또는 자산 손실에 따른 이주, 지역사회 부정적 영향 및 고충이 증가할 수 있다.

### 3. 우선 고려사항

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s, HCV), 국제기구 및 단체 등에서 지정한 ‘보호지역’에서 수행하는 광산 프로젝트인 경우 투자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나. 광물찌꺼기(광미)를 하천이나, 해양에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적치하는 광산 프로젝트인 경우 투자지원을 시행하지 않는다. 단,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저감하거나, 광물찌꺼기(광미)를 적치 및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다. 킴벌리 프로세스(Kimberle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 KPCS)<sup>4)</sup>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되지 않은 비가공 다이아몬드의 채굴 또는 거래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거나 금융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라. 근로자 강제노동, 아동노동, 차별 및 비인도적 대우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및 원주민에 대한 폭력, 협박, 감금, 차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광산 프로젝트인 경우 투자지원을 실행하지 않는다.

## 제 16 조 (정유 및 가스)

1. 적용 범위 : 정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한 탐사, 시추, 채굴, 정제, 가공 활동, 운송, 저장 및 수출 인프라 구축활동, 거래 등이 대상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B0520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C19) 부문이 해당된다.

4) 킴벌리 프로세스(KPCS, Kimberle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 : 분쟁 다이아몬드(블러드 다이아몬드)가 합법 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 국제 인증제도

2. 주요 환경·사회 위험 : 보호 대상 생태 서식지에 대한 접근성 증가에 따른 훼손, 정유 및 가스 생산 과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메탄 누출, 수자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유 가공 및 냉각 작업을 위한 용수 소비 증가, 폐수 관리, 지하수와 지표수의 오염 가능성, 해양 시추 폐기물 배출, 정유 유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화재 및 폭발 사고,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관리 미흡에 따른 재해율 증가, 원주민의 거주지 또는 자산 손실에 따른 이주, 지역사회 부정적 영향 및 고충 증가 등이 야기될 수 있다.

### 3. 우선 고려사항

가. 비전통 석유·가스<sup>5)</sup> 관련 사업모델이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규 여신 및 투자(채권 투자 및 인수,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인프라 금융을 포함) 지원을 금지하며, 기 투자, 지원한 프로젝트 내 비전통 석유·가스 관련 포트폴리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안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축소 및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나. 비전통 석유·가스를 조달 받기 위해 대규모 파이프라인 또는 수출 터미널을 직접 소유하고 있거나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 프로젝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여신 및 투자 지원을 금지한다.

다. 아마존을 포함한 열대우림 지역 내 석유·가스 시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지역의 석유·가스 탐사, 시추와 관련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우 원칙적으로 투자 지원을 금지한다.

라. 단, 비전통 석유·가스 관련 사업모델을 보유한 프로젝트 중 석유·가스의 탐사 및 시추 활동의 1/3 미만이 북극석유·가스와 관련된 경우, 탐사 및 생산활동의 1/3 미만이 초심층수(UDW) 석유·가스와 관련된 경우 투자 지원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5) 비전통 석유 및 가스 : 일반적으로 탄소, 황 함량이 높은 석유 및 가스를 포괄하는 용어로 오일샌드(Oil sands / Tar sands), 셰일오일/가스(Shale oil/gas), 북극석유/가스(Artic oil/gas), 초심층수 석유/가스(Ultra Deep Water Oil/Gas), 비전통 추출 방식으로 생산된 LNG, 초중질유(Extra heavy oil), 치밀오일/가스(Tight oil/gas), 석탄층메탄가스(Coalbed Methane), 가스하이드레이트(Gas hydrate) 등을 포함한다. ‘전통적’과 ‘비전통적’ 범주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

- 오일샌드 : 모래, 점토, 물, 비투멘(Bitumen, 점성이 높은 원유)이 혼합된 형태의 퇴적물이며, 추출 과정에 에너지 및 물 사용량이 매우 많으며, 과도한 탄소배출량을 발생시킴
- 셰일오일/가스 : 셰일 암석층에 갇힌 원유로 추출과정에서 메탄 누출을 유발함
- 북극석유/가스 : 북극해 및 주변 지역에 매장된 석유/가스 자원으로 유출 사고 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하며, 과도한 탄소배출을 발생시킴
- 초심층수 석유/가스 : 수심 1,500m이상의 해저에서 개발되는 석유로 유출 사고 시 생태계 피해가 심각하며, 과도한 탄소배출을 발생시킴

## 제 17 조 (에너지)

1. 적용 범위 : 가스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바이오매스 화력 발전소, 복합 열병합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등이 대상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발전업(D3511) 부문이 해당된다. 단, 자금목적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sup>6)</sup>’에서 정의하고 있는 녹색 및 전환활동에 부합할 경우 여신 신규취급 확대 대상이다.
2. 주요 환경·사회 위험 : 화석연료 사용을 통한 유해 화학 물질, 온실가스 배출, 온배수 및 폐기물 배출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야기할 수 있고, 발전소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발전소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다.
3. 우선 고려사항
  - 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심각한 환경·사회 영향을 야기하는지 파악하고, 필요 시 독립적인 제3자 평가결과를 활용한다.
  - 나. ‘JB금융그룹 탈석탄 금융 선언’에 따라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특수목적회사 발행 채권 및 일반 채권 투자 및 인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다. 석탄 채굴, 발전, 인프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여신 및 투자(채권 투자 및 인수,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인프라 금융을 포함) 지원을 금지하며, 기 투자·지원한 프로젝트 내 석탄 채굴, 발전, 인프라 관련 포트폴리오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권고안에 따라 관련 사업을 축소 및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 제 18 조 (산업별 공통 배제사항) 산업별 가이드라인에 공통 적용되는 배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생물다양성 보전
  - 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sup>7)</sup>의 적용을 받는 식물 또는 동물 종, 제품의 거래
  - 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High Conservation Values, HCV)<sup>8)</sup>, 국가보호지역 등으로 보호되고 있는 지역 내 산업별 활동

6)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K-Taxonomy) : 한국의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제시를 통해 녹색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7)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무분별하게 포획·채취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를 규제하기로 한 다자 간 국제협약

8)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HCV, High Conservation Values) : 국제삼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에서 개발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구분한 개념으로, 생물학적, 생태학적, 사회·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특별히 보전해야 하는 지역을 의미

## 2. 근로 조건 및 인권 존중

가.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나.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는 별도의 채널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다. 고용 차별

라. 별도의 인적자원 관리 정책 혹은 행동강령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 제 8 장 생물 다양성

JB금융그룹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호 및 보전을 위해 중요한 서식지 또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하여,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강화된 심사 및 진단 실사 과정을 수행한다.

**제 19 조 (생물 다양성 리스크 관리)** JB금융그룹은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 의사결정 또는 자체심의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관련 이슈를 고려한다.

1. 생물다양성 투자 원칙 :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HCV) 지역 또는 국제 과학계 등에서 고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및 투자지원을 실행하지 않는다.
2. 자연자본 및 생물 다양성 리스크 평가 방법론 : UNEP의 ‘자연 위험 프로파일 방법론 (Nature Risk Profile Methodology)<sup>9)</sup>’,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권고사항, TNFD<sup>10)</sup>의 LEAP접근법<sup>11)</sup>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산, 공급망, 포트폴리오에 대하여 자연에 대한 영향과 의존도를 분석한다.

9) UNEP의 자연 위험 프로파일 방법론(Nature Risk Profile Methodology) : 특정 기업의 자산 및 포트폴리오가 자연자본(생태계, 수자원, 생물다양성 등)에 얼마나 의존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재무적 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접근법

10) TNFD(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 기업의 자연/생물다양성에 대한 의존도, 영향, 리스크, 기회 등을 파악하고 이를 공시/관리하도록 돕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11) LEAP 접근법 : TNFD가 제시하는 자연 관련 리스크·기회를 통합적으로 식별·평가하기 위한 분석 절차로 Locate(자연과의 접점 파악), Evaluate(의존성과 영향 평가), Assess(리스크와 기회 분석), Prepare(대응 및 공시 준비) 단계로 구성

## 부 칙

| 연혁 | 개정일자       | 시행일자       | 비 고                 |
|----|------------|------------|---------------------|
| 제정 | 2025.12.18 | 2025.12.18 | 2025년 제2차 ESG위원회 승인 |

**<별표1> 환경·사회 리스크 사전 체크리스트**

|   |                        |
|---|------------------------|
| <b>1. 경영체계</b>  |                        |
| 1-1. 귀사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했습니까? (예시: 관련 정책 및 규정 개발, 전담 조직 구성, ISO 14001 또는 ISO 26000과 같은 국제 표준 도입)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1-2. 귀사의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ESG 위험과 영향을 식별하고 있습니까?<br>(예시: 환경 오염, 근로자 인권 침해, 정보 보안 위협 등)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1-3. 식별된 ESG 위험과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정량적 지표를 정의하고, 관련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시: 온실가스 배출량, 재활용률, 안전사고 발생 건수, 남녀 임금 격차 등)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1-4. ESG 위험과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예산, 인력, 시설 투자 등)을 수립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1-5. 귀사는 사업운영 전과정(Life-Cycle)에 영향을 주고받는 이해관계자 그룹을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b>2. 환경경영</b>  |                        |
| 2-1. 사업장 신설, 증설 또는 폐쇄 시, 법적 요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EIA)를 실시했습니까?<br>*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2-2. ISO 14001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환경경영시스템(EMS)을 구축하고 제3자 인증을 받았습니까<br>*환경경영시스템(EMS) :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2-3.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데이터를 측정하며, 국가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2-4.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 2)과 주요 에너지원별 사용량을 측정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2-5. 폐기물(일반, 건설, 지정) 데이터를 유형별로 측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2-6.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관련 정보를 확보·관리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있습니까?<br>*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저장, 운송, 폐기 및 응급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문서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2-7. 지난 3년간 환경오염 및 유해물질 노출과 관련하여 벌금,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받은 사고가 있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b>3. 생물다양성</b>   |                        |
| 3-1. 사업장 주변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 운영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3-2. 사업장 주변 2km 이내에 IUCN 보호지역이 있습니까? 해당 지역이 있다면, 사업 운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할 계획을 마련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                        |
|--|------------------------|
| 3-3. 사업장 주변 지역의 생물종 또는 서식지를 보전, 복원, 또는 확대하기 위한 활동 계획이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b>4. 문화유산</b>   |                        |
| 4-1.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지역에 문화유산이 있는지 사전에 조사하고 분석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4-2. 사업 진행 중 중요 문화유산이 발견될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폐쇄와 같은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4-3.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중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활동이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b>5. 안전보건</b>   |                        |
| 5-1. 국제 표준인 ISO 45001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제3자 인증을 받았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5-2.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정부기관에 제출하고, 관련 인허가증 및 안전검사증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5-3. 생산설비 및 작업 기계에 안전장치나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또한, 해당 장치의 점검 및 보수 기록을 근로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비치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5-4. 근로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5-5. 사업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 유형별로 대응 시나리오(예: 대응 조직, 전파 체계, 복구 활동 등)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5-6. 사업장에 필요한 소방 설비를 갖추고, 관련 서류(소방 계획서, 소방완공검사필증 등)를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관리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5-7. 법적 요건에 따라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별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b>6. 노동인권</b>   |                        |
| 6-1. 모든 근로자와 개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강제노동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6-2. 아동 노동을 방지하기 위해 채용 시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또한, 사업장 출입 시 신분 확인을 통해 근로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6-3.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법적 근로시간을 준수하며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6-4.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며, 정해진 일자에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                        |
|---|------------------------|
| 6-5. 근로자의 초과근로를 시스템으로 기록하고, 기록된 시간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수당, 대체휴무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6-6. 근로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미이행 시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6-7. 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채널(노동인권 이슈, 불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또한, 고충 처리 절차와 제보자 및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b>7. 지역사회</b>  |                        |
| 7-1. 유해화학물질 취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 위험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또한, 유출 사고에 대비한 대응 계획과 방제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7-2. 사업 운영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환경, 안전, 보건 영향을 주민에게 알리고, 협의 및 조정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7-3. 사업장 보안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 접대 및 응대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인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b>8. 원주민</b>   |                        |
| 8-1. 원주민 토지 수용 시, 원주민의 *자발적 사전 인지 동의(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얻었습니까?<br>*자발적 사전 인지 동의(FPIC: 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 토착민,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의 권리 존중을 위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강요 없이 동의를 얻는 절차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8-2. 원주민의 토지를 수용하게 될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재정착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거주지 매입을 위한 적절한 금액을 보상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 8-3. 원주민이 이주하게 될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재정착 및 생계 유지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했습니까?  | * 예<br>* 아니오<br>* 해당없음 |

<별표2> 프로젝트별 등급기준

| 구분            | 업종                 | Category A   | Category B   | Category C                |
|---------------|--------------------|--|--|---------------------------|
| Mining        | 광업                 | Category B의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주1) 및 주2)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채광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해당없음 (최소 Category B등급 이상) |
| Mining        | 자원 채취              | Category B의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주1) 및 주2)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2만 제곱미터 이상<br>2)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br>3)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산지 훼손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채석단지 개발<br>4) 골재 채취 예정지의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 | 해당없음 (최소 Category B등급 이상) |
| Power         | 발전                 | Category B의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주1) 및 주2)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1) 발전시설용량이 1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br>2) 345 킬로볼트 이상의 지상 송전선로로서 선로길이가 10 킬로미터 이상인 것<br>3) 765 킬로볼트 이상의 육외 변전소<br>4)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회처리장<br>5) 조성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저탄장 | 해당없음 (최소 Category B등급 이상) |
| Manufacturing | 제조 사업장             | Category B의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주1) 및 주2)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시멘트 공장, 유리 제조 공장, 일관제철 사업장   | 단순 조립 사업장                 |
| Oil & Gas     | 원유 및 천연가스, 세일가스 채굴 | 육상/해상 채굴   | 해당 없음 (Category A 분류)  | 해당 없음 (Category A로 분류)    |
| Oil & Gas     | 저유시설, 석유비축기지       | Category B의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주1) 및 주2)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저장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  | 해당없음 (최소 Category B등급 이상) |
| Oil & Gas     | 가스저장 시설            | Category B의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주1) 및 주2)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저장시설의 용량이 10만 킬로리터 이상  | 해당없음 (최소 Category B등급 이상) |
| Manufacturing | 제조 사업장             | Category B의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주1) 및 주2)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시멘트 공장, 유리 제조 공장, 일관제철 사업장, 전기로 사업장, 금속 제련 사업장, 펄프 및 제지 공장,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장, 의약품 제조 공장, 정유/화학/석유화학 공장, 비료 공장, 염색 공장, 부품 제조 공장, 기타 제조 사업장                         | 단순 조립 사업장                 |

|                                |            |  |  |                           |
|--------------------------------|------------|--|--|---------------------------|
|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 항만 건설      | Category B의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주1) 및 주2)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1) 외곽시설(길이 300 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br>2) 계류시설(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br>3) 그 밖의 여항시설 (사업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만 해당) | 해당없음 (최소 Category B등급 이상) |
|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 항만 준설      | Category B의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주1) 및 주2)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준설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 해당없음 (최소 Category B등급 이상) |
|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 도로         | Category B의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주1) 및 주2)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1)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지하도로 4 킬로미터 이상의 신설<br>2) 왕복 2차로 이상인 기존 도로로서 길이 10 킬로미터 이상의 확장   | 해당없음 (최소 Category B등급 이상) |
|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 댐/저수지/하구둑  | Category B의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주1) 및 주2)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만수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 저수용량이 2천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 해당없음 (최소 Category B등급 이상) |
|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 철도/도시철도 건설 | Category B의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주1) 및 주2)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해당없음 (최소 Category B등급 이상) |
|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 공항         | Category B의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주1) 및 주2)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1) 공항 또는 비행장 신설<br>2) 길이가 500 미터 이상인 활주로의 건설<br>3) 그 밖의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 개발 사업으로서 사업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해당없음 (최소 Category B등급 이상) |
|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 하천 공사      | Category B의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주1) 및 주2)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가 10 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 해당없음 (최소 Category B등급 이상) |
|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 매립         | Category B의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주1) 및 주2)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 3만 제곱미터 이상<br>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30만 제곱미터 이상  | 해당없음 (최소 Category B등급 이상) |
|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 간척         | Category B의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주1) 및 주2)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해당없음 (최소 Category B등급 이상) |
|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 관광단지 개발    | Category B의 요건을 충족하며, 아래 주1) 및 주2)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주1) 환경적으로 민감한 사업: 1) 생태학적 보전지역 또는 주변 사업 (예: 자연 보호 지구), 또는 2)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주2)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업: 1) 대규모 주민 이주 발생 사업, 또는 2) 문화 인류학적 유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별표3> 유의영역 업종 분류

| 개정분류체계 (제11차 기준) |                                  |     |                                 |                 |
|------------------|----------------------------------|-----|---------------------------------|-----------------|
| 대분류              |                                  | 중분류 |                                 | 비고              |
| 코드               | 항목명                              | 코드  | 항목명                             |                 |
| A                |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 02  | 임업                              | 고탄소업종 外<br>유의영역 |
| A                |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 03  | 원양 어업 (03111)<br>연근해 어업 (03112) | 고탄소업종 外<br>유의영역 |
| B                | 광업 (05~08)                       | 05  |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B                | 광업 (05~08)                       | 05  | 석탄 채굴업 (05100)                  | 배제영역            |
| B                | 광업 (05~08)                       | 05  | 석유, 가스 탐사 및 채굴 활동 (05200)       | 배제영역            |
| B                | 광업 (05~08)                       | 06  | 금속광업                            |                 |
| B                | 광업 (05~08)                       | 07  | 비금속광물광업 ; 연료용 제외                |                 |
| B                | 광업 (05~08)                       | 08  | 광업지원 서비스업                       |                 |
| C                | 제조업 (10~34)                      | 11  | 음료제조업                           |                 |
| C                | 제조업 (10~34)                      | 12  | 담배제조업 (12000)                   | 고탄소업종 外<br>유의영역 |
| C                | 제조업 (10~34)                      | 13  |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                 |
| C                | 제조업 (10~34)                      | 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C                | 제조업 (10~34)                      | 18  |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업                  |                 |
| C                | 제조업 (10~34)                      | 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
| C                | 제조업 (10~34)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         |                 |
| C                | 제조업 (10~34)                      | 22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C                | 제조업 (10~34)                      | 23  |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                 |
| C                | 제조업 (10~34)                      | 24  | 1 차 금속 제조업                      |                 |
| C                | 제조업 (10~34)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                 |
| C                | 제조업 (10~34)                      | 25  | 무기/군수업 (25200)                  | 고탄소업종 外<br>유의업종 |
| C                | 제조업 (10~34)                      | 28  | 전기장비 제조업                        |                 |
| C                | 제조업 (10~34)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C                | 제조업 (10~34)                      | 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C                | 제조업 (10~34)                      | 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D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35)        | 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 D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35)        | 35  | 화력 발전업 (35113)                  | 배제영역            |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36~39)    | 36  | 수도업                             |                 |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36~39)    | 37  |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36~39)    | 38  |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36~39)    | 38  | 방사성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 (38240)     | 배제영역            |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36~39)    | 39  | 환경정화 및 복원업                      |                 |
| F                | 건설업 (41~42)                      | 42  | 전문직별공사업                         |                 |
| H                | 운수 및 창고업 (49~52)                 | 49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
| H                | 운수 및 창고업 (49~52)                 | 50  | 수상운송업                           |                 |
| H                | 운수 및 창고업 (49~52)                 | 51  | 항공운송업                           |                 |
| H                | 운수 및 창고업 (49~52)                 | 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 J                | 정보통신업 (58~63)                    | 61  | 우편 및 통신업                        |                 |
| M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73)          | 72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br>서비스업   |                 |
| N                | 사업시설관리,<br>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76) | 74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                 |
| N                | 사업시설관리,<br>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76) | 75  | 사업지원 서비스업                       |                 |
| N                | 사업시설관리,<br>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76) | 76  | 임대업 ; 부동산제외                     |                 |

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녹색활동 또는 전환활동으로 분류 가능한 경우 본 유의영역업종에서 제외할 수 있음